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개월	
재해보상 선택	[] 유족보상 [] 행방불명보상			
재해 선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 연월일	사망연월일(또는 행방불명연월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선원과의 관계	해당 선원의 ()		
청구인 (선박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선박 정보	선박명		선박톤수	
	선박소유자		업종	
	선원수	한국인 선원()명, 외국인 선원()명		
	재해보험사업자			
청구 이유	※ 해당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을 「선원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10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선박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
서류

- 1. 「선원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가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선원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